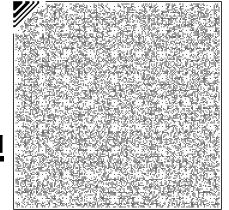


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 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1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 조치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.

3. 일일 확진자수 감소 추세, 의료여력,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,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합니다.

4. 중앙정부, 지자체,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*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,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10. 12.(0시 부터) ~ 별도해제시까지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

· (제1항)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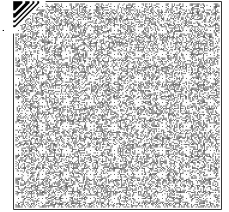
· (제1항 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· (제1항 제2의2호)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1).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

○ 대상 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

○ 조치 내용 : 집합 금지



붙임 1. 고위험시설(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) 집합금지 조치 1부

○ 대상 시설 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
○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붙임 2. 고위험시설 11종 집합제한 조치 1부

2). 집합·모임·행사

○ 조치 내용 :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·공적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해제하되, 개최 자제 권고

- 집합·모임·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권고

- 다만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명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 등 5종 행사는 시설면적 기준 인원 제한(4㎡ 1명)

붙임 3. 5종 행사 집합제한 조치 1부

3). 스포츠 행사

○ 조치 대상 :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

○ 조치 내용 :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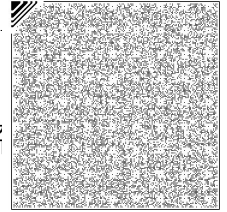
- 추후 코로나19 상황 고려 단계적 확대

4).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

○ 대상 시설(16종) :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(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놀이공원, 공연장, 영화관, PC방, 학원(300인 미만, 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스터디카페, 오락실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○ 조치 내용 : 집합 제한

- 시설 내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이용자 간 거리두기, 2
·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


붙임 4.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1부

5). 교회

○ 대상 시설 : 서울·인천·경기 지역 교회

○ 조치 내용 : 대면예배 허용(예배실 좌석 수의 30% 이내)

- 소모임·행사·식사 금지는 유지, 대면예배 비율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교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

붙임 5.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

6). 실내·외 국공립시설

○ 조치 내용 : 실내·외 국공립시설*제한적 운영

-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철저

*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, 도서관, 고궁, 공원, 경마·경륜·경정 등

7).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

○ 대상 시설 : 복지관, 경로당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지역아동·다함께돌봄 센터등 사회복지이용시설, 어린이집

○ 조치 내용 : 운영 재개하되 시설별 방역 대응지침 마련·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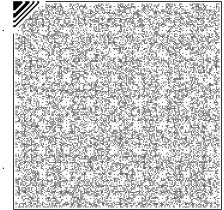
8). 유연·재택근무 활성화

○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

※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
9).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※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 배포 및 시행예정인 “마스크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” 참고



5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

- 각 부처,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,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
 -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안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,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지사



주무관	강재희	행정사무관	이성경	생활방역팀장	김정숙	전략기획반장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	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	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-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장	박능후		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(2020. 10. 11.)** 접수
중앙사고수습본부-26502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ncov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1722 팩스번호 044-202-1971 / jaehuekang@korea.kr / 비공개(5)